기 안 용 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시설 20310-	(전화: 731-6346)	시행상 특별취급
보존기간	영구·준영구. 10. 5. 3. 1.	시장	
수신처 보존기간	영구		
시행일자	88.6.21		
보조기관	도시계획국장 전결 시설계획과장 가로계획2계장	협조	법무담당관 청도 통제관
기안책임자	나성수		
경유 수신 참조	각 안 참조	발신명의	시 장
제목	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변경결정		

(제1안)

수신 내부결재

1. 강남 도정20312-1383(88.3.9)의 관련입니다.

2. 위호와 관련 강남구청장으로 부터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변경결정요청받은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결정코저 합니다.

3. 본건은 우리시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(88.5.13)에서 심의 가결된 사안입니다.

첨 부 : 고시문 및 관련도서 1건.

발송 1988. 6. 21. 서울특별시

공고 1988. 6. 2 제 524 호

(제2안)

수 신 기획부 장관

참 조 도시시설계획과장

제 목 알림

1. 우리시 관내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을 별첨과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에 보고합니다.

첨 부 : 고시문 사본 및 도면 각1부.

(제3안)

수 신 총무처 장관

제 목 관보게재 의뢰.

1. 다음과 같이 관보게재 의뢰합니다.

가. 구분 : 고시

나. 게재 건명 :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변경결정

다. 법적근거 : 도시계획법 제12조.

라. 게재내용 : 별첨 고시문.

첨 부 고시문 사본 1부.

(제4안)

수 신 강남구청장

참조 : 도시정비과장

제 목 : 같음

1. 도정 30312-1383 (88. 3. 9)의 관련임.

2. 위호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변경결정 요청한 안건에 대하여 별첨 고시문과 같이 고시되었기 통보하니 관계도면정리 및 계획업무에 착오없기 바람.

첨 부 : 고시문 사본 및 도면 1부.

(제5안)

수 신 : 수신처 참조 - 4

제 목 : 같음.

1. 우리시 관내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고시되었기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첨 부 : 고시문 사본 및 도면 각 1부.

수 신 처 : 도시계획과장. 교통기획과장. 같.

고 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 534 호

도시계획시설(주차장)변경 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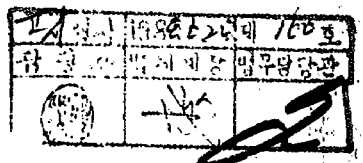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을 도시기획법 제12조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1항 나목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합니다.

2. 관계도면은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88. 6. 21

서 울 특 별 시 장

가.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변경 결정 조서

구분	시설명	위 치	규 모	비 고
기정	주차장	강남구 논현동 111-13	925㎡	
변경	"	"	0	폐 지

나. 도면 : 강남구청 비치도면과 같음. 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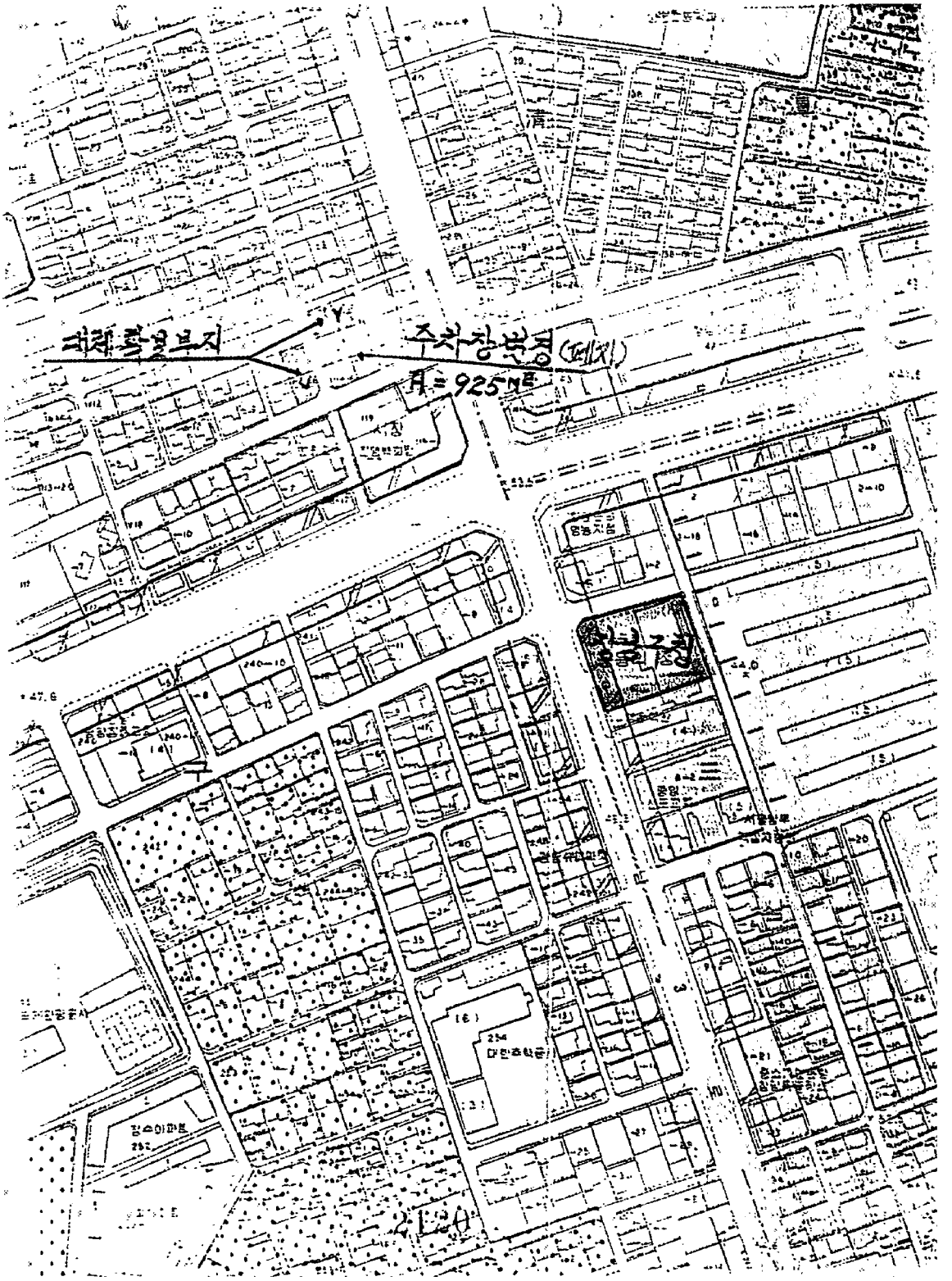

대체 활용부지
주차장 변경 (폐지)
A = 925㎡